

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심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.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투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
(신용거래융자/대주) 핵심설명서

1 신용거래 개요

- 신용거래융자란 일부는 투자자 자신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- 신용거래대주는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차입(대주)하여 매각하는 제도입니다
- 신용거래기간 중에는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 (연속재매매)이 가능합니다.
-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최소담보유지비율은 140% ~ 150% 이며, 이에 미달하는 경우 담보부족발 생일로부터 1영업일까지 담보부족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.
- 또한 고객과 사전 합의한 경우 최소담보유지비율(140% ~ 150%) 외에 추가로 임의상환담보유지 비율(120%)을 요구하며, 120%에 미달하는 경우 담보부족발생일 당일까지 담보부족금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.
- 담보비율은 동일 계좌 내에 2개 이상의 신용공여(신용거래융자, 증권담보융자 등) 가 있을 경우 합산하여 계산하며,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.

2 신용거래의 위험성

- 신용거래융자는 일정률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훨씬 많은 주식을 매수하게 되어 예측과 달리 **주가 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원금 모두 또는 투자원금 이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**
-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한 내에 추가로 **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.**
- 추가담보 미납 등으로 담보주식을 **임의처분 하는 경우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처분될 수 있으며** 임의처분 금액은 담보부족금액을 훨씬 상회할 수 있습니다.

3 투자자 유의사항

- 회사의 추가담보 납부요구 등 통지내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**투자자는 주소.사무소 등 연락장** 소.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추가담보 납부기간 동안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담보부족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담보부 족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에는 계좌 내의 모든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출금.출고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각 금융투자회사의 **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** 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금융투자협회(<u>www.kofia.or.kr</u>) → 통합공시시스템 → 전체메뉴 → 금융투자회사 공시 → 특정공시 → 신용거래융자이자율)
- 유통금융종목(증금으로부터 차입하여 신용매수한 종목)의 의결권 행사는 고객이 회사에 의결 권 행사를 신청하여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4 투자사례

- * 거래 제비용(수수료, 세금, 대출이자)은 고려하지 않음(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규모 증가)
- 투자원금 500만원, 신용거래융자금 500만원, 10,000원인 주식 1,000주 매입, 최저 담보유지비율 150% 가정 (추가담보납부 요구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담보를 납입하지 않아 그 다음 영업일에 임의처분하는 경우 가정)

<u>날짜</u>	<u>주식가격</u>	<u>계좌평가금액</u>	<u> 담보평가비율</u>	<u>비고</u>	
매입당시	<u>10,000원</u>	<u>10,000,000원</u>	<u>200%</u>		
D일 장마감	<u>7,000원</u>	<u>7,000,000원</u>	140%	추가담보 납부요구(1회차)	
<u>D+1일</u>	<u>6,200원</u>	6,200,000원	<u>124%</u>	<u>(</u> 2회차)	
<u>D+2일</u>	반대매매 수량을 하한가인 4,340원으로 산정후 1,000주 전량매도 (4,500원 체결)				

- (1)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(6,200원) 대비 30% 하락한 가격(하한가, 4,340원)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경우, 1,000주 모두 반대매매 필요
 - 반대매매가 4,5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450만원(1,000주×4,500원) 으로 신용수량 1,000주를 모두 매도해도 신용거래융자금(500만원)을 전부 상환할 수 없어 50 만원 추가입금 필요

5 신용거래의 구체적인 조건

구 분	내 용					
신용거래보증금율	기본형A종목군45%(현금15%,대용30%) 45%(현금20%,대용25%) 50%(현금30%,대용20%)보수형A,B종목군45%(현금45%) 수형C종목군50%(현금30%,대용20%)					
융자한도	개인 1억원 이내 (개인신용점수 및 투자자정보에 따라 증액 가능)					
최소담보유지비율	종목군에 따라 140% ~ 150%A 종목군B 종목군C종목군140%145%150%* 2개 종목군 이상의 신용공여가 있을 경우, 공여금액을 기중 평균하여 계산함 증권담보융자 등 모든 신용공여를 합산하는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					
상환 기간	90일 (연장가능, 90일 단위로 추가 270일까지)					
추가납부기간	담보부족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<mark>1영업일</mark> 이내 ※임의상환담보유지비율(120%)을 미달한 경우 담보부족 발생일 <mark>당일</mark> 이내					
신용거래융자 이자율	-7일 이내 -30일 이내 -60일이내 -360일 이내 연체이자율 연 % 연 % 연 % 연 % 연 % (기준금리 (기준금리 +7산금리 대출금리가 향후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매신규로 매수되는 수량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로 대출이자가산출됩니다. ■ 이자징수방식 : 소급방식 - 결제일 기준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기간 일수에 따른이자율을 적용하여이자를 계산한 후 기징수된이자를 차감하는 방식 (기간별로 구분하여이자율을 따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융자기간에 따른최종이자율을 적용하여이자를 계산하는 방식) - 이자계산방법 : (신용융자금액 × 신용이자율 × 총경과일수/365) - 기납입 이자금액					
신용거래융자 가능종목	상장종목 (관리·투자경고·투자위험종목, 위탁증거금 100%로 지정된 종목 및 기타 회사가 지정한 종목은 제외)					
상환방법	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상환 가능 (매매를 통해 상환하는 경우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됨)					
전결금리	고객신용도, 융자금액, 융자기간, 거래기간, 수수료 등 고객의 수익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결금리 적용 가능함					

구 분	내 용
대주	 대주 보증금율: 대용, 현금순으로 100% 담보유지비율: 140% 대주이자: (1~7일5.9%, (8일~30일) 7.5%, (31일~60일) 8.5%, (61일~360일)9.5% (단, 당일 대주매도, 당일매수상환시에도 1일 이자부과) 대주매각대금 이용료: 연 0.1% 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 원천징수) 대주만기: 90일 (연장가능, 90일단위로 추가 270일까지) 한도 -초기투자자: 3,000만원 (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투자자) -경험투자자: 7,000만원 (최근 2년 내 5회 이상 & 누적차입규모 5,000만원 이상 투자자) -성숙투자자: 1억 (최근 2년 내 5회 이상 & 누적차입규모 5,000만원 이상 투자자&최초 투자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자) -전문투자자: 1억 (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투자자) * 성숙/전문투자자가 기본한도 1억을 초과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당사 그룹별 한도까지 증액이 가능하다.

▶대주거래시 순포지션(Net Position)적용

- •주식 보유시 동일 보유종목 대주매도 : 불가능
- 신용거래대주 보유시 동일 보유종목 현금/신용매수 : 불가능

▶공매도 잔고 보고대상

- ·당일 장마감기준 주식종목별 순보유잔고(체결기준)가 순매도잔고 상태로서 순매도포지션 잔고수량이 해당종목의 발행주식 총수의 0.01% 이상 및 평가액 1억원인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
- 10억원 이상은 잔고비율과 관계없이 보고 (최초 보고 후 잔고변동이 없어도 계속 보고의무가 발생함, 다수 증권사를 통한 동일한 종목 거래시 순보유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, 보고해야 함)
- 보고의무자 : 투자자본인
- •보고기한 : 보고의무 발생일~2영업일째 되는 날 장 종료후(시간외 포함) 까지 지체없이 금감원 홈페이지(http://www.fss.or.kr)에 보고

▶공매도 잔고 공시대상

- 발행주식 수의 0.5%이상 순보유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의 투자자명 (성명, 주소, 국적, 생년월일), 종 목명, 최초 해당일을 공시
- · 최초의무 발생일 : 보고기준(△0.5%)에 최초로 해당한 날
- •기준 산출 방법 : 회사(고유, 일임, 신탁, 펀드)의 순보유잔고를 합산
- ※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여 이루어지므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 원에 자료제출을 하는 것으로 공시의미 이행이 완료됩니다.

※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**콜센터(1588-2145)** 또는 **홈페이지(www.hygood.co.kr)**에 문의 할 수 있고,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**, **금융투자협회(2003-9423)**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□ 본 설명서는 이 상품의 중요내용만을 선별히	l여 요약한 것이므로 이 설명서에만	의존하지 마시고 <mark>신용</mark>
거래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비	 	
[설명직원 확인]		
• 한양증권 ()지점 ()	(은)는 위 내용에 대하여	고객님께 설명
하고, 이 핵심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.		(LIEN EE L. Ob
	20	<u>(서명 또는 인)</u>